

# OECD 뇌물방지 협약과 회원국의 국내법규 집행\*

## 한국, 캐나다, 프랑스 사례 비교

### OECD Anti-Bribery Convention and Its Implementation in the Member-States: The Cases of Korea, France and Canada

안 상 옥(Sang Wuk AHN)\*\*

#### ABSTRACT

On December 17, 1997, 28 OECD member-states and 4 observer countries (Argentina, Bulgaria, Chile, Slovakia, Brazil) signed a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agreed to introduce the inspection measure for this Convention.

In Korea, France and Canada, National law, which recognize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was adopted. In these countries the measures for the execution of this OECD convention was proclaimed.

As member-states of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Korea, France and Canada are respecting their obligation in ratifying this Convention and introducing the national regulations for i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France has a problem of transparency of governance. In Korea, the legal executions of anti-bribery related with foreign public officials are concentrated on the bribery cases of American troops in Korea. It means that the Korean authority has difficulties of legal executions against Korean companies's abroad bribery cases. Even if Canada is ranked as the country with few corruption case, Canada has few legal execution against the bribery case in which Canadian companies offer the bribery to foreign public official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Anti-bribery environment in Korea, France and Canada, the improvement of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governance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introduction of legal measures for the Anti-corruption.

Key words: OECD, Anti-Bribery Convention, France, Canada, Anti-Corruption

## I. 서론

OECD 뇌물방지 협약은 1997년 12월17일 체결되었다. 본 협약에 서명한 28개 OECD 회원국 및 5개의 옵저버 국가(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브라질)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감시체제 도입에 합의하였다.

OECD가 뇌물방지협약은 미국의 주도 하에 성사되었다. 뇌물방지협약 제정의 직접

\* 본 논문은 제30회 한국부패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캐나다의 부패와 정책사례비교연구”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조교수

적 동기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연루된 도청사건인 워터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국기업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포착되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었다. 조사결과 미국 500대 기업 중 117개 기업을 포함한 400여 기업들의 외국공무원 대상 뇌물스캔들이 확인되었다. 1975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닉슨 전 대통령의 부정 선거자금 의혹을 캐기 위해 주요 기업들의 해외계좌를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증권거래위원회는 록히드사가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이 일본 관료들의 계좌로 흘러간 사실을 인지하였다. 1976년 2월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다국적기업소위원회에서 록히드사가 일본에 항공기 판매를 위한 로비자금을 마루베니 상사를 통해서 다나카 수상을 포함한 일본 고위관료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미국 기업의 뇌물제공 문제는 미국과 일본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되었다. 결국 미국기업의 해외 뇌물제공 사례가 미국의 대외정책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고,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1977년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불법으로 규정한 해외부패관행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이 제정되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뇌물 제공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해외부패관행법에 따라서, 뇌물을 제공한 기업을 미국법에 의해 처벌하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미국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선진국 기업은 미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해외시장 진출에서 미국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정부는 다른 국가에 해외뇌물공여방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 견해차이가 계속 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OECD 산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 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에서 해외뇌물공여방지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그 결과 CIME산하에 ‘OECD 뇌물방지 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이 구성되었고 1994년 5월 15일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OECD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ECD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이 채택되면서 OECD 차원의 본격적인 부패방지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결실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1997년 12월 17일 체결되었다.

OECD 뇌물방지 회원국들은 뇌물방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국내차원의 법제정비를 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 별로 각국의 부패수준이나 해외 공무원 대상 뇌물공여에 대한 처벌 수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프랑스, 캐나다의 상황을 비교하여 반-부패에 관련된 국제협약에 대한 각국의 의지의 상이성과 그 근본 원인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OECD 뇌물방지 협약 채택과 관련된 배경에 대해 우선 고찰을 시도하고, 한국, 프랑스, 캐나다에서 반-부패와 관련 쟁점 및 뇌물방지 협약에 대한 집행의 차이점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규명을 시도할 것이다.

## II. OECD 뇌물방지협약<sup>1)</sup>

1977년 ‘해외부패관행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의 제정으로 미국기업들이 해외부패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외국기업들과의 국제경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자, 미국정부는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법률 제정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은 해외부패방지에 관한 국내법 제정을 요구한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은 개별 국가를 설득하는 전략에서 GATT, UN, OECD, IBRD 등의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협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외부패방지법의 확산전략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OECD 이사회에서 1994년 5월 15일 “국제상거래 뇌물방지 OECD 권고(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the OECD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sup>2)</sup>가 채택되면서 해외뇌물공여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방지하는 최초의 국제합의였다. 1994년 OECD 이사회 권고에 따라, CIME산하에 ‘OECD 뇌물방지 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은 OECD 회원국들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에 관련된 각국의 법률 규정과 그 규정의 이행상황, 부패방지를 위한 회원국의 활동을 조사하여, 1995년 6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공여에 관한 권고에 대한 검토보고서(Review of the Recommendation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와 1996년 5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공여에 대한 권고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를 제출하였다.

1997년 5월에는 OECD 각료이사회에서 1994년의 이사회 권고를 보다 구체화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개정권고(Revised Recommendation on Combating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sup>3)</sup>가 채택되었다. OECD

1) “II. OECD 뇌물방지협약”은 안상욱(2012: 149-153)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2) 1994년 OECD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원국들이 자국기업의 국제상거래에서 타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등의 방지를 권고한다.
- ② 외국 공무원의 법적 의무에 위반하는 일체의 금전적 혜택과 이권은 뇌물로 간주한다
- ③ 각 국가는 외국 공무원에 대하여 뇌물공여 금지를 위한 형법, 민법, 상법, 행정법, 조세법, 기업회계기준, 기타 관계법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④ OECD 회원국가간에 국제간 정보교환, 증거제공, 범죄인도 등의 협력을 하고, 뇌물수수행위 등의 금지를 위한 새로운 협약과 제도를 마련한다.
- ⑤ 비회원국가와 다른 국제기구에 부패추방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구체적으로 ‘CIME’에게 이 권고안의 집행을 점검할 책임을 부여한다. 특히 ‘OECD 뇌물방지 작업반(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3) 개정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는 또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방지에 관한 개정권고”의 국내이행과 뇌물방지협약 추진에 대하여 1998년 4월 1일까지 OECD 회원국은 OECD 뇌물방지 작업반에서 합의된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이행입법안을 제출하고, 1998년 12월까지 입법을 완료하도록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 형사처벌을 위한 국제협약 제정 협상을 개시하여 1997년 12월까지 협약을 제정하고, 1998년 말까지 공표할 것을 결정하였다.

1997년 11월 협상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고, 1997년 12월 17일 각료급회의에서 33개국<sup>4)</sup>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 차원의 부패방지협약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이하 ‘OECD 뇌물방지협약’으로 약칭)”이 체결되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효조건은 OECD 뇌물방지협약 5조에 따라 회원국 상위수출국 10개국 중 5개국이 비준하고 동 5개국 수출총액이 상위 10개국 전체 수출액의 60%를 상회할 때, 5개국이 OECD의 비준서 제출 60일 이후에 발효되는 것이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가 비준서를 제출해서 1999년 2월 15일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다. 현재 OECD 뇌물방지협약을 발효한 국가는 38개국이다.

OECD 뇌물방지협약 이전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고위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따른 비용의 일부분 일뿐이며 범죄라는 인식은 일반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였다.

OECD 뇌물방지 협약이 각국 국내법에서 규정된 뇌물방지 법률과 차이점은 국내법에서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를 모두 처벌을 받지만, OECD 뇌물방지협약은 뇌물공여 행위만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는 국가주권의 원칙상 자국의 형사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공무원을 처벌할 수 없는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 사이에서는 OECD 뇌물방지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국제적인 뇌물공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간 사법공조가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수뢰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해당 공무원 소속국은 국내뇌물법으로 해당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공무원의 범주는 입법부, 행정 또는 사법상의 임명 또는 선출직 직위를 가진 자와 외국을 위하여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자 및 국제기구 공무원도 포함되었다. 국회의원의 포함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일부 국가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고려하여 OECD 뇌물방지협약의 외국공무원 범주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결

- 
- 외국공무원에 공여된 뇌물의 비용처리 금지
  - 외국공무원 뇌물공여에 대한 형사처벌 위한 공통기준(common elements) 합의
  - 기업회계기준 및 부패방지 내부통제장치 강화
  -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기업에 대해 국내 정부조달시 입찰 제한

4) 1997년 12월 17일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호주를 제외한 28개 OECD 회원국 및 5개 옵저버 국가이다. 5개의 옵저버 국가는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브라질이다.

국 포함하기로 결정되었고, 반면 정당에 대한 뇌물은 협약에서 제외되었다.

뇌물의 범주에 대한 규정은 영업을 취득 또는 유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약속하는 금전적 또는 다른 형태의 이익을 모두 포함하였다. 처벌대상은 뇌물을 제공한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었고 뇌물에 대한 몰수와 추징은 물론 뇌물로 취득한 이익까지 몰수하도록 규정되었다.

표1. OECD 뇌물방지협약 비준 및 이행입법 발효 현황 (2012년 4월 기준)

국가	비준서 기탁	협약 발효	이행입법 발효
그리스	1999. 2. 5	1999. 4. 6	1998.12. 1
남아프리카공화국	2007. 6.19	2007. 8.18	2004. 4.27
네덜란드	2001. 1.12	2001. 3.13	2001. 2. 1
노르웨이	1998.12.18	1999. 2.16	1999. 1. 1
뉴질랜드	2001. 6.25	2001. 8.24	2001. 5. 3
덴마크	2000. 9. 5	2000.11. 4	2000. 5. 1
독일	1998.11.10	1999. 2.15	1999. 2.15
러시아	2012. 2.17	2012. 4.17	2011. 5.16
룩셈부르크	2001. 3.21	2001. 5.20	2001. 2.11
멕시코	1999. 5.27	1999. 7.26	1999. 5.18
미국	1998.12. 8	1999. 2.15	1998.11.10
벨기에	1999. 7.27	1999. 9.25	1999. 4. 3
불가리아	1998.12.22	1999. 2.15	1999. 1.29
브라질	2000. 8.24	2000.10.23	2002. 6.11
스웨덴	1999. 6. 8	1999. 8. 7	1999. 7. 1
스위스	2000. 5.31	2000. 7.30	2000. 5. 1
스페인	2000. 1. 4	2000. 3. 4	2000. 2. 2
슬로바키아	1999. 9.24	1999.11.23	1999.11. 1
슬로베니아	2001. 9. 6	2001.11. 5	1999. 1.23
아르헨티나	2001. 2. 8	2001. 4. 9	1999.11.10
아이슬란드	1998. 8.17	1999. 2.15	1998.12.30
아일랜드	2003. 9.22	2003.11.21	2001.11.26
에스토니아	2004.12.14	2005. 2.12	2004. 7. 1
영국	1998.12.14	1999. 2.15	2002. 2.14
오스트리아	1999. 5.20	1999. 7.19	1998.10. 1
이스라엘	2009. 3.11	2009. 5.10	2008. 7.21
이태리	2000.12.15	2001. 2.13	2000.10.26
일본	1998.10.13	1999. 2.15	1999. 2.15
체코	2000. 1.21	2000. 3.21	1999. 6. 9
칠레	2001. 4.18	2001. 6.17	2002.10. 8
캐나다	1998.12.17	1999. 2.15	1999. 2.14
터키	2000. 7.26	2000. 9.24	-
포르투갈	2000.11.23	2001. 1.22	2001. 6. 9
폴란드	2000. 9. 8	2000.11. 7	2001. 2. 4

프랑스	2000. 7.31	2000. 9.29	2000. 9.29
핀란드	1998.12.10	1999. 2.15	1999. 1. 1
한국	1999. 1. 4	1999. 3. 5	1999. 2.15
헝가리	1998.12. 4	1999. 2.15	1999. 3. 1
호주	1999.10.19	1999.12.18	1999.12.17

자료: OECD (<http://www.oecd.org/dataoecd/59/13/40272933.pdf>)

### III. 프랑스, 한국, 캐나다의 국내법률 정비<sup>5)</sup>

OECD 뇌물방지협약의 회원국으로서 한국과 캐나다는 비교적 비슷한 시기에 국내 법률을 정비하여, 실행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1998년 12월 28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법률 제5588호로 제정-공포하였다. 1999년 2월 15일 법률이 발효되었다. 캐나다의 경우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효를 승인하는 법안이 1998년 12월 17일 채택되었고, OECD 뇌물방지협약 집행을 위한 국내법이 1999년 2월 14일에 실행되었다.

특히 캐나다가 OECD에 1999년 12월 17일 OECD에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될 수 있었다. OECD 뇌물방지 협약발효시점이 OECD 뇌물방지 협약에 가입한 10대 수출국 중 5개국이 비준서를 OECD에 기탁하고, 이들 국가의 총 수출액이 10대 수출 국가 총수출액의 50%를 차지할 때로 규정되었었는데, 아일랜드가 1998년 8월 17일, 일본이 1998년 10월 13일, 독일이 1998년 11월 10일, 헝가리가 1998년 12월 4일, 미국이 1998년 12월 8일, 핀란드가 1998년 12월 10일, 영국이 1998년 12월 14일, 끝으로 캐나다가 1998년 12월 17일 OECD에 뇌물방지협약 비준서를 기탁하면서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다.

캐나다와 한국이 비슷한 시점에 OECD 뇌물방지 협약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반면에 반면에 프랑스는 관련분야의 법률조치에서 늦은 편이었다. 프랑스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효를 승인하는 법안이 1999년 5월 25일 채택되었고, OECD 뇌물방지협약 집행을 위한 국내법이 2000년 7월 31일이나 공포되어서, 2000년 9월 29일에 실행되었다.

캐나다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 집행을 위해 제정된 법은 “해외공무원 부패법안(The Corruption of Foreign Officials Act)”이다. 캐나다에서 해외공무원 부패법안은 형법 183조의 범죄행위 목록에 포함되어, 경찰이 해외공무원 뇌물공여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도청 및 기타 전자 감시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었다. 또한 해외 공무원 부패법안에 따라서, 캐나다 외교부장관, 국제무역부장관(Minister of International Trade)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캐나다 의회에 법집행

5) 프랑스 국내법률 정비 사례는 안상욱(2012: 153-155)를 인용.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해외공무원 뇌물공여 방지 협약에 관련된 캐나다의 법률조치 사항은 소득세 법안에 서도 찾을 수 있다. 캐나다에서 해외공무원 부패법안에 해당하는 금품제공행위는 소득세 감면이 불허된 비용의 항목에 포함되어서,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이 비용처리되는 것을 국내법으로 방지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캐나다의 형법 425조 1항은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불법행위를 폭로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OECD 뇌물방지협약과는 별도로 캐나다는 부패방지를 위해 미주부패방지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1999년 6월 7일 체결하여, 2000년 6월 1일 비준하였고, UN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2004년 5월 21일 체결, 2007년 10월 2일 비준하였으며,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UN협약을 2000년 12월 14일 체결, 2002년 5월 13일 비준하였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뇌물방지 협약에 관한 국내법률이 2007년 11월 13일 부패방지 법안에 의해 개정되어,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공무원에 대한 수동적인 뇌물공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 공무원에 대한 능동적인 뇌물공여', '외국 또는 국제 재판소 사법관에 대한 수동적인 뇌물공여', '외국 또는 국제 재판소 사법관에 대한 능동적인 뇌물공여' 등 4가지 항목이 해외공무원 뇌물공여 방지를 위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관련 문제가 이미 사법분야에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EU이외의 지역에도 관련법이 적용되며, 뇌물공여가 해외비즈니스의 대가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가성이 없는 해외공무원 뇌물공여에 대한 처벌은 프랑스에서 2007년 부패방지법안의 개정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반면에, OECD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공여 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공여가 처벌되도록 하기위해서 캐나다의 '해외공무원 부패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2011년 3월 권고안에서도 캐나다에 권고하고 있다.

2007년 11월에 개정된 프랑스의 부패방지법은 외국 또는 국제 사법절차에서 증인 매수 (435조 12항) 및 외국 또는 국제 사법관에 대한 공갈협박(threats against or intimidation) (435조 13항) 역시 위법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위의 사항은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적용이 된다.

2007년 개정된 프랑스의 부패방지법은 지금까지 조직범죄 수사에서나 사용되던 전화도청이나, 특정 장소나 차량에서 음성 및 영상 녹화도 프랑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뇌물공여와 영향력 행사 (bribery and trading in influence)'관련 범죄수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뇌물방지 협약 가입 직후부터 도청이나 전자장비를 활용한 캐나다에 비해서는 비교적 늦은 법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뇌물을 공여한 기업의 노동자가 이를 폭로하여 불이익에 직면하였을 때, 프랑스 노동법 1161조 1항은 좋은 의지를 가지고 고용주나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한 제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뇌물공여에 관련해서 해외 뇌물공여에 대해서 예전 법률에서 구성요건으로 성립된 사항에 대해서 모호한 점을 해소하려하였다. 2011년 5월 17일 법안을 통해서 능동적인 뇌물공여 및 수동적인 뇌물공여, 외국공무원, 국제기구 공무원, 외국 및 국제 재판소 사법관 관련사항, 그리고 수동적인 영향력 행사, 능동적인 영향력 행사 관련사항에 대해서 개정이 있었다.

프랑스는 OECD 뇌물방지 협약외에도, 부패방지와 관련하여, 'UN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2003년 12월 9일 체결, 2005년 7월 11일 비준하였고, '유럽범죄인인도협약'을 1957년 12월 13일 체결, 1986년 2월 10일 비준하였다. 그리고 '범죄수익금 돈세탁, 추적, 압류 및 몰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Laundering, Search, Seizure and Confiscation of the Proceeds from Crime)'이 1991년 7월 5일 체결, 1997년 2월 25일 비준되었고, 'EU 회원국 공무원 또는 EU 공무원이 연루된 부패에 대한 방지 협약(EU Convent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the EU Member States)'이 1999년 5월 27일 비준되었다. 또한 프랑스는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UN협약'을 2000년 12월 12일 체결, 2002년 10월 29일 비준하였다.

한국에서는 OECD 뇌물방지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률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이 시행되었다. 본 법률은 외국공무원을 외국정부의 행정, 입법, 사법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리고 외국정부로부터 공적임무를 수행받은 단체(예를 들어, 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기업의 임직원 등)의 직원, 공적국제기구 업무수행자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뇌물공여를 범죄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서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와 ‘일상적 · 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등에게 동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금전 기타 이익을 약속 ·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과는 별도로 한국은 UN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2003년 12월 10일 체결, 2008년 2월 29일 비준하였고,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UN협약을 2000년 12월 13일 체결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 캐나다, 프랑스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이후, 협약비준 및 국내법제정에서 OECD 뇌물방지 협약가입국으로서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국내법의 운용 및 뇌물방지 기업에 대한 처벌에서는 각국의 상황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고 있다.

#### IV. 뇌물사건 발생 및 법적조치 사례<sup>6)</sup>

OECD 뇌물방지협약이 각국에서 관련 국내법 정비로 집행되고 있지만, 각국의 상황은 상이하다.

표2. 뇌물공여지수\*

순위	국가/영토	지수	인터뷰 기업 수	표준편차	90% 신뢰구간	
					하한	상한
1	네덜란드	8.8	273	2.0	8.6	9
1	스위스	8.8	244	2.2	8.5	9
3	벨기에	8.7	221	2.0	8.5	9
4	독일	8.6	576	2.2	8.5	8.8
4	일본	8.6	319	2.4	8.4	8.9
6	호주	8.5	168	2.2	8.2	8.8
6	캐나다	8.5	209	2.3	8.2	8.8
8	싱가포르	8.3	256	2.3	8.1	8.6
8	영국	8.3	414	2.5	8.1	8.5
10	미국	8.1	651	2.7	7.9	8.3
11	프랑스	8	435	2.6	7.8	8.2
11	스페인	8	326	2.6	7.7	8.2
13	대한민국	7.9	152	2.8	7.5	8.2
14	브라질	7.7	163	3.0	7.3	8.1
15	홍콩	7.6	208	2.9	7.3	7.9
15	이탈리아	7.6	397	2.8	7.4	7.8
15	말레이시아	7.6	148	2.9	7.2	8
15	남아프리카공화국	7.6	191	2.8	7.2	7.9
19	대만	7.5	193	3	7.2	7.9
19	인도	7.5	168	3	7.1	7.9
19	터키	7.5	139	2.7	7.2	7.9
22	사우디아라비아	7.4	138	3	7	7.8
23	아르헨티나	7.3	115	3	6.8	7.7
23	아랍에미리트	7.3	156	2.9	6.9	7.7
25	인도네시아	7.1	153	3.4	6.6	7.5
26	멕시코	7	121	3.2	6.6	7.5
27	중국	6.5	608	3.5	6.3	6.7
28	러시아	6.1	172	3.6	5.7	6.6
	평균	7.8				

\* 지수의 범위는 0-10이고, 지수가 10이 되면 해당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외사업에서 결코 뇌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지수가 낮을수록 해당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외 사업에서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1a: 5)

6) 표3, 표5 및 프랑스 관련 사례는 안상욱(2012: 155-163)을 인용.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발행하는 부패지수에 따르면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와 러시아는 해외사업에서 뇌물을 주는 관행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난다. 비교대상국가에서는 캐나다가 해외사업에서 뇌물을 주는 관행이 가장 적었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 대한민국의 순이었다.

표3. 투명성 지표

순위	국가	CPI 2011 Score	CPI 2010 Score	CPI 2009 Score	CPI 2008 Score
1	뉴질랜드	9.5	9.3	9.4	9.3
2	덴마크	9.4	9.3	9.3	9.3
2	핀란드	9.4	9.2	8.9	9.0
4	스웨덴	9.3	9.2	9.2	9.3
5	싱가포르	9.2	9.3	9.2	9.2
6	노르웨이	9.0	8.6	8.6	7.9
7	네덜란드	8.9	8.8	8.9	8.9
8	스위스	8.8	8.7	9.0	9.0
8	호주	8.8	8.7	8.7	8.7
10	캐나다	8.7	8.9	8.7	8.7
11	룩셈부르크	8.5	8.5	8.2	8.3
12	홍콩	8.4	8.4	8.2	8.1
13	아이슬란드	8.3	8.5	8.7	8.9
14	독일	8.0	7.9	8.0	7.9
14	일본	8.0	7.8	7.7	7.3
16	오스트리아	7.8	7.9	7.9	8.1
16	바베이도스	7.8	7.8	7.4	7.0
16	영국	7.8	7.6	7.7	7.7
19	아일랜드	7.5	8.0	8.0	7.7
19	벨기에	7.5	7.1	7.1	7.3
21	바하마	7.3			
22	카타르	7.2	7.7	7.0	6.5
22	칠레	7.2	7.2	6.7	6.9
24	미국	7.1	7.1	7.5	7.3
25	우르과이	7.0	6.9	6.7	6.9
25	프랑스	7.0	6.8	6.9	6.9
25	세인트 루시아	7.0			
28	아랍에미리트	6.8	6.3	6.5	5.9
29	에스토니아	6.4	6.5	6.6	6.6
30	키프로스	6.3	6.3	6.6	6.4
31	스페인	6.2	6.1	6.1	6.5
32	포르투갈	6.1	6.0	5.8	6.1
32	보츠와나	6.1	5.8	5.6	5.8
32	대만	6.1	5.8	5.6	5.7
35	슬로베니아	5.9	6.4	6.6	6.7
36	이스라엘	5.8	6.1	6.1	6.0
36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5.8			
38	부탄	5.7	5.7	5.0	5.2
39	푸에르토리코	5.6	5.8	5.8	5.8
39	몰타	5.6	5.6	5.2	5.8
41	폴란드	5.5	5.3	5.0	4.6

순위	국가	CPI 2011 Score	CPI 2010 Score	CPI 2009 Score	CPI 2008 Score
41	케이프베르데	5.5	5.1	5.1	5.1
43	대한민국	5.4	5.4	5.5	5.6
44	부르나이	5.2	5.5	5.5	0
44	도미니카	5.2	5.2	5.9	6.0
46	모리시어스	5.1	5.4	5.4	5.5
46	마카오	5.1	5.0	5.3	5.4
46	바레인	5.1	4.9	5.1	5.4

자료: Guardian지<sup>7)</sup>

뇌물공여에 대한 관행은 사회의 전반적인 투명성 정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표2과 표3를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경우 대만에 비해 사회의 투명성 정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해외뇌물공여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뇌물공여에 대한 관행정도가 사회의 전반적인 투명성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실제 비교대상 국가에서 투명성과 뇌물공여 관행이 높게 나타난 한국의 경우, 끊임 없는 부패스캔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 뇌물스캔들로 양 대통령의 아들이 징역형을 받은 것을 들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도 대통령의 형이 부패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받았다. 최근의 총선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다.

한국보다 상황이 낫은 편이지만, 프랑스의 부정부패 스캔들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국제투명성 지표조사인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는 같은 규모의 경제대국인 독일(14위), 일본(14위), 영국(16위)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전 세계 청렴도 순위에서 25위를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뇌물스캔들은 오래 전부터 큰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2000년 5월 11일 프랑스 르피가로지는, 1992년에는 프랑스 방위산업체인 톰슨-CSF(Thomson-CSF) 그룹이 1992년 대만에 프리깃함 6척을 팔면서 당시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목인 아래 대만 집권당과 중국 공산당에 총 5억달러(당시 25억프랑)의 커미션을 제공한 것으로 보도했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지는 “롤랑 뒤마 전 외무장관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사법당국이 찾아낸 공식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5억달러 중 4억달러는 대만 집권당에 전달됐고 나머지 1억달러는 프리깃함 판매에 따른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건네졌다”고 밝혔다.<sup>8)</sup>

대만에 프리깃함을 판매하는 것이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프랑스 외무부는 톰슨의 판매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지만, 국영기업 엘프

7) Guardian지 2011년 12월 1일자,

<http://www.guardian.co.uk/news/datablog/2011/dec/01/corruption-index-2011-transparency-international#data> (2012년 11월 10일 검색)

8) 동아일보, 2009년 9월 22일 일자 기사 참조

가 롤랑 뒤마 외무장관의 내연녀였던 크리스틴 드비에-종쿠르(Christine Deviers-Joncour)를 로비스트로 고용해 뒤마를 설득했다.

결국 경제예산부, 총리실, 프랑스대통령궁의 승인을 받아 톰슨은 대만측과 프리깃함 판매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2000년 3월 14일 대만 국방부차관은 프랑스에 공식적으로 톰슨의 대만정부에 대한 커미션 제공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대만조사위원단의 프랑스 방문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2000년 3월 1일 본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롤랑 뒤마는 헌법재판소장직에서 사임하였고, 프랑스 검찰은 롤랑 뒤마에게 징역 2년에 2백50만프랑의 벌금을 구형하였다. 롤랑 뒤마는 항소해서 2심에서 무죄방면되었다.

프랑스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회원국으로서 관련입법조치를 완료하였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른 선진국과 부패방지에 대한 노력을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기울여 오고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 기업에 관련된 뇌물스캔들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다.

동서독 통합을 서두르던 서독의 콜 총리가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동독 산업설비 중 일부를 프랑스 기업 엘프(Elf)에 헐값으로 넘길 때, 커미션을 수수하였다. 이는 2001년 프랑스 검찰에 포착되어 엘프 중역이 체포되고, 콜 정부가 이 거래와 관련된 비밀문서를 폐기 처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프랑스 국영기업인 엘프는 이전에도 아프리카 자원확보를 위해 프랑스 정부의 아프리카 자문단이나 비밀정보부와 공동보조를 취하였다.<sup>9)</sup>

1997년 콩고 대통령선거에서 프랑스의 지원을 받은 구에소 대통령이 당선되고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리소바가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석유 개발권은 프랑스로 넘어갔다. 리소바는 프랑스로 망명해서 구에소 대통령 진영이 앙골라에서 유입된 불법무기로 무장을 했으며, 엘프가 앙골라에서 불법무기를 수송을 담당했다고 프랑스 법원에 엘프를 고소하면서 엘프가 앙골라 반군과 연루된 무기 스캔들이 드러났다.

또 프랑스의 석유기업 역시 뇌물관련 스캔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07년 3월 30일 AFP통신은 프랑스의 대표적 석유기업 '토탈'의 최고경영자 크리스토프 드 마제리가 이란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보도했다. 드 마제리가 이란 가스전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라프산자니 전 이란 대통령의 아들 비서에게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프랑스 경찰에서 확보했으며, 수사를 통해서 스위스 은행계좌에서 1억 스위스 프랑이 이란 측에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토탈이 1997년 사우스 파르스 가스전 개발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도 이란 정부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다. 결국 토탈은 1997년 이란 국영회사 NIOC와 가스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프랑스 기업이 연루된 뇌물스캔들에서 한국 관련된 사례가 있었다. 한국에 고속전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불법로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로비스트 최만석이 불

9) <http://www.sisapres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0721>  
(2012년 11월 10일 검색)

법 로비자금으로 1100만 달러 가량을 알스톰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최만석은 한국에서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도주하였다가, 2006년 2월 미국에서 체포되었고, 이에 최만석은 미국 법원에 한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거부해 달라는 소송을 벌였으나, 2009년 2월 범죄인인도가 합당하다는 미국 항소원법 판결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만석의 폐암 투병으로 인해 송환이 일시 보류되고 있었던 중 최만석이 폐암으로 사망하여 알스톰의 한국에서의 뇌물 스캔들은 수사가 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뇌물스캔들을 일으켰던 알스톰사는 2008년 스위스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스위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알스톰은 라트비아, 튀니지,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뇌물을 제공했고, 이들 국가에서 알스톰이 고용한 컨설턴트 성공보수의 상당부분이 해당 국가 공무원들에게 뇌물도 전달되었음을 밝혀내었다. 스위스 법원은 알스톰의 스위스 법인인 Alstom Network Schweiz AG에게 3,850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스위스에 이어 프랑스에서도 2008년에 알스톰의 뇌물공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알스톰이 외국에서 사업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총 2억 달러 이상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표4에서처럼, 국제투명성기구 자료를 보면 프랑스에서 뇌물방지에 관련된 법집행은 다른 선진경제대국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끊임없이 프랑스 기업이 연루된 뇌물스캔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집행은 미국, 독일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프랑스의 부패관련 법률체계가 비교적 잘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제투명성기구는 해외에서 일어난 부패범죄에 대해 프랑스 법원의 판결이 제한적이라면서 그 이유 중 하나를 제시하고 있다.<sup>10)</sup>

프랑스법은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인 또는 피해자가 반드시 프랑스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형법 113조 6항과 113조 7항에 따르면, 프랑스법은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행위에 대해서, 그 범죄행위가 해당국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그 피해자가 프랑스인일 때 적용될 수 있다. 프랑스 검사는 피해자의 고소 또는 해당국가의 공식적인 항의가 발생할 때 기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해외뇌물사건은 프랑스법원에서 주로 경미한 범죄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았다.

청렴도에서 한국과 프랑스에 비해 나은 점수를 받은 캐나다 역시 부패스캔들이 발생해왔다. 특히 퀘벡지역에서 정치권과 건설업계, 마피아가 서로 연관된 뿌리 깊은 부패가 존재해 왔으며, 현재 관련문제에 대한 조사가 의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련 사례 중 하나가 몬트리올 시의 건설 업무 담당 전직 공무원인 질 쉬프르낭(Gilles Surprenant)이 1991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체로부터 60만 캐나다 달러(약 7

10)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1). *Bribe Payers Index 2011*. Berlin: Transparenc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Secretariat.(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1: 35))

억여원)의 뇌물을 정기 상납받아왔다고 퀘벡 지역 건설 비리를 조사 중인 의회 조사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를 증언했으며, 이중 그는 이 중 25만 달러를 카지노에서 탕진하고 12만3천 달러를 사업가에게 빌려주었으며, 잔액으로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12만2천800달러를 최근 조사위원회에 자진 반납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에는 캐나다 건설회사인 SNC Lavalin(라발린)이 방글라데시의 파드마 대교 건설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방글라데시 셰이크 하시나 총리를 비롯해 다른 고위 관료에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다. 문제는 파드마 대교 건설사업이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었고, 세계은행은 이번 스캔들을 문제삼아 미화 12억 달러(약 1조 3700억원)의 방글라데시에 대한 세계은행 차관을 전격 취소하였다.

SNC Lavalin은 올해 5월에도 내부감사 과정에서 장부처리가 되지 않은 3500만 캐나다 달러의 지출이 적발되면서 주가가 20% 폭락하면서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15억 캐나다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리고 이 돈은 리비아에서 SNC Lavalin이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카다피 일가에 뇌물로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추후 진행된 감사에서는 5600만 캐나다 달러의 회사자금이 해외 에이전트에 부적절하게 지급되었음이 밝혀졌다.

표4. OECD뇌물방지협약 회원국에서의 해외뇌물 사건 법집행 현황

국가	법적절차 집행건수				세계 수출 점유율 (2010, %)	세계 해외투자 점유율 (% , 2009)
	총 집행건수		조사진행건수			
	2010년	2009년	2010년	2009년		
<b>강력한 법집행(Active Enforcement)</b>						
덴마크	14c	14c	1	1	0.8	0.9
독일	135	117	22	24	8.2	8.4
이탈리아	18	18	2d	3d	2.9	4.6
노르웨이	6	6	1	1	0.9	0.6
스위스	>35	30	0d	0	1.6	2.6
영국	17e	10	26	24	3.5	13.3
미국	227	169	106	100	9.8	15.7
<b>온건한 법집행(Moderate Enforcement)</b>						
아르헨티나	2	2	0d	0	0.4	p.1
벨기에	4	4	0b	0b	2.0	2.5
핀란드	6	5	3	5	0.5	0.4
프랑스	24	18	5	10	3.5	11.3
일본	7	7	0d	0	4.5	3.7
대한민국	17	17f	0	1	2.9	0.8
네덜란드	9	7	3	0	3.3	1.6
스페인	11	11	0d	1	2.0	6.0
스웨덴	2	2	4	5	1.2	1.9

미비한 법집행(Little or No Enforcement)						
호주	1	1	3	4	1.4	1.2
오스트리아	0	0	5d	4d	1.1	1.6
브라질	1	1	8	4	1.3	0.4
불가리아	4	3	0	1	0.1	0.1
캐나다	2	2	23	1	2.5	2.7
칠레	2	0	2	0	0.4	0.2
체코	0	0	0	0	0.8	0.2
에스토니아	0	0	0	0	0.1	0.1
그리스	0d	0d	0d	0d	0.3	0.3
헝가리	27	27	2	0	0.6	0.2
아일랜드	0	0	0d	0d	1.1	1.0
이스라엘	0	0	0	0	0.4	0.4
룩셈부르크	2	-	약간d	-	0.5	0.5
멕시코	0	0	0	0	1.7	0.4
뉴질랜드	1	0	1	2	0.2	0.1
폴란드	0	0	-	-	1.0	0.2
포르투갈	4	4g	6	0	0.4	0.3
슬로바키아	0	0	1	1	0.4	0.4
슬로베니아	0	0	2	2	0.2	0.1
남아프리카공화국	0	0	5	1	0.5	0.2
터키	0	0	5	4	0.9	0.1

- a. 표의 통계숫자는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된 이후 누적된 횟수를 의미함: 조사된 사건 항목의 경우만 그 해의 뇌물공여 사건 숫자를 의미함
- b. 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2010 연례보고서에 인용된 수치
- c. UN Oil-for-Food Programme의 뇌물스캔들에 연루된 사건.
- d. 수치가 불명확하거나 언론보도에 근거한 수치
- e. 2011 현황포함
- f. 벨기에는 EU기구를 포함하면, 10건이 추가로 늘어나게 됨
- g. 마지막해 보고서에서 교정된 수치
-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1b: 8)

캐나다 기업의 세계무역에서의 비중이나, 최근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캐나다 기업의 해외뇌물공여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표4와 표5에 따르면 2010년까지 발생한 캐나다 기업의 해외공무원 뇌물공여 건수가 2건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2011년 5월 24일 캐나다의 CBC방송은 캐나다는 선진 7개국(G7) 가운데 국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국 기업의 뇌물을 처벌하는 조치가 가장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표5. 해외뇌물공여사건 현황

국가	2010년까지 발생한 부패 사건	중요 부패 사건	중요 부패사건이 발생한 마지막 해	2010년까지 형사(민사)집행		무죄방면		세계 수출 점유율 (2010, %)
				개인	기업	개인	법인	
<b>강력한 법집행(Active Enforcement)</b>								
덴마크	14b	>3	2008	0	0	0	0	0.8
독일	135	>16	2010	34(4)	7	0	0	8.2
이탈리아	18	10	2009	21	18	1	0	2.9
노르웨이	6	3	2008	5	1	2	0	0.9
스위스	>35	>3	2010	3	0	0	0	1.6
영국	17c	17c	2011c	8	7	0	0	3.5
미국	227	>39	2011c	40(48)	48(27)	0	0	9.8
<b>온건한 법집행(Moderate Enforcement)</b>								
아르헨티나	2	2	2009	0	0	0	0	0.4
벨기에	4	1	2006	0b	0b	0	0	2.0
핀란드	6	2	2010	0	0	0	0	0.5
프랑스	24	6d	2010	3c	0	2	0	3.5
일본	7	1	2007	6	1(1)	0	0	4.5
대한민국	17	1	2007/2008	13	3	0	0	2.9
네덜란드	8	8	2007	0	0	1	0	3.3
스페인	11	2	2008	0	0	0	0	2.0
스웨덴	2	1	2009	1	0	0	0	1.2
<b>미비한 법집행(Little or No Enforcement)</b>								
호주	1b	1	2008	0	0	0	0	1.4
오스트리아	0	0	-	0	0	0	0	1.1
브라질	1	0	-	0	0	0	0	1.3
불가리아	4	0	-	0	0	0	0	0.1
캐나다	2	0	-	0	1	0	0	2.5
칠레	2	0d	-	0	0	0	0	0.4
체코	0	0	-	-	-	1	0	0.8
에스토니아	0	0	-	-	-	0	0	0.1
그리스	0	0	-	-	-	0	0	0.3
헝가리	27	0	-	25	0	2	0	0.6
아일랜드	0	0	-	0	0	0	0	1.1
이스라엘	0	0	-	-	-	0	0	0.4
룩셈부르크	2	0IV	-	-	-	0	0	0.5
멕시코	0	0	-	-	-	0	0	1.7
뉴질랜드	1	0IV	-	0	0	0	0	0.2
폴란드	0	0	-	-	-	0	0	1.0
포르투갈	4	0	-	6	0	1	0	0.4
슬로바키아	0	0	-	-	-	0	0	0.4
슬로베니아	0	0	-	-	-	0	0	0.2
남아프리카 공화국	0	0	-	-	-	0	0	0.5
터키	0	0	-	-	-	0	0	0.9

- a. OECD 뇌물방지 작업반(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2010년 연례보고서의 통계  
b. 모든 사건이 UN Oil-for-Food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건. 몇몇 사건은 국제협약상의 제재를 받았는데, 호주에서 이는 민사사건에 의해 진행  
c. 2011년 사건 포함  
d. 통계미비 혹은 언론매체 보고서에 근거한 수치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1a: 9)

국제투명성기구는 캐나다가 OECD(경제협력기구)가 제정한 국외 뇌물기준을 적용하는데 7년 연속 거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캐나다 정부의 반부패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좀 더 가시적인 공식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국제투명성 기구의 분석자료인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캐나다는 해외뇌물 사건에 대한 법집행이 미비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한국기업의 국내 뇌물관행에 비추어 해외공무원에 캐나다 및 프랑스 기업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뇌물이 제공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제 밝혀진 사례는 상당히 미미한 편이다. OECD 뇌물방지협약 3단계 실무그룹의 대한민국에 대한 2011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2008년까지 9건 유죄판결이 있었는데, 중국 외교부 공무원 뇌물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한미군에 뇌물공여 사건이었다. 물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외국공무원들이라는 것을 '감안하여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기소된 대부분의 사건이 주한미군이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한국의 사법절차가 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감독능력이 부족함을 나타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 V. 결론

한국, 프랑스 캐나다는 OECD 뇌물방지협약의 회원국으로서 뇌물방지협약의 비준과 국내입법절차에 대해서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국제투명성 기구의 자료를 통해 볼 때, 프랑스는 청렴도 수준에서 다른 경제대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문제가 뒤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기업이 연루된 해외 뇌물스캔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뇌물관련 부패가 제도의 미비라기보다는 그랑제콜 (Grandes Ecoles) 중심의 프랑스 엘리트의 폐쇄성에 따라서 프랑스 정치 및 경제 지도층에 대한 상호감시 기능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내부에서 그리고 프랑스 기업과 관련된 뇌물공여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법률제도 정비보다는 프랑스의 정치 및 경제, 사법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다른 비교대상 국가인 한국과 프랑스보다 청렴도 수준은 높았지만, 캐나다 기업의 해외뇌물공여 사건을 조사하여 처벌하려는 캐나다 정부의 의지가 프랑스와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제투명성기구와 OECD는 캐나다 정부에 해외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권고하였다.

한국의 경우, 국제투명성 기구의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다른 비교 대상국가에 비해 해외뇌물공여가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한국정부에 의한 조사 및 처벌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로 조사된 사안들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기업의

뇌물공여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한국 내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관련된 한국기업의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조사하고 법적인 처벌을 하였지만, 한국기업의 해외사업에서 제공하는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 것을 의미한다.

한국, 캐나다,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면서 도달한 공통된 결론은 OECD 차원의 뇌물방지 협약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률장치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현재 상황에서, 각국 정부의 거버넌스 개선 및 해외뇌물공여 처벌에 대한 의지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었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었어도, 각 국 정부가 이를 처벌하려는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해외뇌물공여 문제는 쉽게 근절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로 제도적 분석에 중심을 두었던 OECD 뇌물공여에 대한 기존연구 경향은 각국의 거버넌스 문제로 확대되어 분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 김시흥. (2010).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위기와 이탈리아 정치변동. 「유럽연구」, 28(3): 109-132.
- 김신규. (2011). 문화와 엘리트 연속성을 통해 살펴본 중동부유럽의 부패. 「동유럽연구」, 28(1): 133-158.
- 김영중. (1996). 「부패학」. 서울: 송실대출판부.
- 김용훈. (2011). 유럽연합의 통합 동력으로서의 법치주의. 「유럽헌법연구」, 10: 101-161.
- 김종범. (2004). 하부정치문화요소를 통해 본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38(5): 417-437.
- 신현기. (2004). 국가경찰공무원의 부패원인과 방지에 관한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1(1): 212-234.
- 안상욱. (2012). OECD 뇌물방지협약과 프랑스 정책. 「한국부패학회보」, 17(3): 147-165.
- 이상수. (2006).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신뢰체계 구축과 부패방지 연구. 「한국유럽행정학회보」, 3(1): 58-83.
- 임성호. (2004). 비즈니스정보- 중동부 유럽 3국의 21세기 비즈니스 환경: 폴란드에서의 기업활동과 부패. 「국제지역정보」, 133: 99-101.
- 임종현. (2009). 국제 반부패 논의와 유럽연합과 독일의 대응. 「한독사회과학논총」, 19(4): 83-108.
- 전학선. (2008). 프랑스의 고위공직자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의 기준. 「공법학연구」, 9(3): 99-118.
- Heilbrunn, J. R. (2005). Oil and Water? Elite Politicians and Corruption in France. *Comparative politics*. 37(3): 277-296.
- Meny, Y. (1997). La corruption en France: un changement de perception", *CAHIERS FRANCAIS(LA DOCUMENTATION FRANCAISE)*. 281: 50-51.
- Rossetti, C. (2000). The Prosecution of Political Corruption: France, Italy and the USA-A Comparative View. *INNOVATION -VIENNA AND ABINGDON-*, 13 (2): 169-182.
- Ruggiero, V. (1996). France: Corruption as Resentment. *Journal of law and society*. 23(1): 113-131.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1a). Bribe Payers Index 2011. Berlin: Transparenc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Secretariat.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1b). Progress Report 2011. Berlin: Transparency International International Secretariat.

투고일자 : 2012. 10. 20

수정일자 : 2012. 11. 30

게재일자 : 2012. 12. 21

국문초록

## OECD 뇌물방지 협약과 회원국의 국내법규 집행

한국, 캐나다, 프랑스 사례 비교

안상욱(부경대)

1997년 12월 17일, OECD 28개 회원국과 4개의 옵저버국가(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브라질)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의 뇌물수수를 금지하는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체결하고, 협약이행을 위한 법적절차를 도입하는데 합의하였다.

한국, 프랑스, 캐나다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을 인정한 프랑스 국내법이 채택되었다. 이들 국가에서 또한 OECD 뇌물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절차가 공표되었다.

OECD 뇌물방지협약의 회원국으로 한국, 프랑스, 캐나다는 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적 절차를 도입하면서 협약체결국으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프랑스의 거버넌스는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 외국공무원이 연루된 뇌물공여에 대한 법적처벌은 주로 주한미군과 관련된 뇌물공여사건에 집중되었다. 이는 한국정부가 한국기업의 해외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처벌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캐나다가 다른 비교대상국가에 비해서 청렴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캐나다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캐나다기업의 뇌물공여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 프랑스, 캐나다에서 반부패 환경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거버넌스의 개선이 반부패 관련 법률제도 도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OECD, 뇌물방지협약, 프랑스, 캐나다, 반부패